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<p>②(생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